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김의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948
----------	------

발의년월일 : 2017.10.26
 발 의 의 원 : 김의식 의원
 정 용 의원
 도재준 의원
 장상수 의원
 이재화 의원
 배지숙 의원

1.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과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을 통해 정책결정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주체·분야에서 빅데이터가 널리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공공기관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5조)
- 나. 빅데이터책임관의 지정·임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다.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라. 빅데이터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제13조)
- 마.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빅데이터의 수집·관리, 빅데이터 활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제17조)
- 바. 빅데이터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8조)
- 사. 빅데이터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제20조)
- 아. 빅데이터 관련 비밀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협의체 구성·운영을 정함(안 제23조·제2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 발췌(붙임1 참조)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빅데이터”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대량 데이터(수치·문자·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포함한다)의 집합(이러한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빅데이터 산업”이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빅데이터의 생산·유통·활용 및 관리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비식별화”란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빅데이터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가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 조건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빅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책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빅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 ①시장은 빅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는 빅데이터책임관을 둘 수 있다.

1. 빅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 및 활용
 2.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
 3. 빅데이터의 비식별화
 4. 제18조에 따른 시 빅데이터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5. 빅데이터 시책 발굴 및 사업별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사전협의·조정·지원 등 총괄
- ② 빅데이터책임관은 빅데이터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 ③ 시장은 빅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 등을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둘 수 있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 및 활용
3.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
4. 빅데이터 활용 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
5.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
6. 빅데이터의 구축·활용을 위한 재정 확보
7.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빅데이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 빅데이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 변경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분석 및 점검
3.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정책·제도 개선
4.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1. 빅데이터책임관 및 시 공무원
2. 시의회 의장이 빅데이터 관련 전문성을 인정하여 추천하는 사람
3. 전문가·교수 등 빅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빅데이터 기반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빅데이터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제척사유 해당 안건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자료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서 요청하는 경우 시스템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빅데이터 수집·관리) ① 시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빅데이터를 확보·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빅데이터 활용)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행정·생활·산업·복지·교육·문화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정책 수립 및 서비스 제공
2.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
3. 빅데이터 활용의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4.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교육
5. 그 밖에 빅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7조(빅데이터 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빅데이터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의 빅데이터 산업 및 활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18조(빅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빅데이터의 원활한 활용과 제공을 위하여 시 빅데이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2. 빅데이터 서비스 기획 및 분석 지원
3. 빅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
4. 수요 맞춤형 빅데이터 시범사업 추진
5.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지원
6.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7. 빅데이터 관련 일자리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
8. 빅데이터의 활용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
9.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무

③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시 출자·출연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교육 실시) ① 시장은 공무원들의 빅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빅데이터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이나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이나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평가) 시장은 공공기관의 빅데이터 활용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제22조(포상)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 및 정책추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을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비밀보호를 위한 조치) ① 시장은 빅데이터를 활용 및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빅데이터의 관련 업무를 위임하거나 센터의 운영을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호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따라 우려되는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을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 관리·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 개선
 - 자. 공유재산관리
 -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소류지·보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관리
- 하. 재해대책의 수립·집행
- 거. 지역경제의 육성·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